

인천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가단2404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김희영

피고B

변론 종결2024. 3. 19.

판결 선고2024. 4. 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2. 12. 2.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1,565,5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565,5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4. 1.부터 2022. 11. 8.까지 C에게 합계 59,48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22. 12. 2. 아들인 피고와 E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C 명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3,409,485원을 피고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하면서 피고에게 위 돈으로 C의 세금이나 병원비를 납부하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위 돈을 보관하다가 2023. 2. 1.부터 2023. 5. 31.까지 위 돈 중 일부 금액으로 C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F(C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어머니)에게 이체함으로써 위 돈을 모두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은 2022. 12. 2. 피고에게 23,409,485원을 증여하였다. 위 증여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이고, 이에 관한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11,565,5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565,575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C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과 피고는 2022. 12. 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11,565,5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565,575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금을 인출·이체하는 데 명의인 본인 확인이나 본인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명의인이 예금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C과 피고 사이 법률관계 앞선 기초사실에 을 제5,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C이 2022. 12. 2. 자신에게 이체한 돈을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다가 그 돈 중 일부로 C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피고가 2023. 5. 30. 및 2023. 5. 31. F에게 이체한 합계 20,000,000원)는 C의 병원비를 대신 지출하였던 F에게 그 비용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2022. 12. 2. 이체된 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C과 피고 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을 모아 보면,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은 2022. 12. 2. 피고에게 23,409,485원을 이체함으로써 그 돈에 관한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할 수 있다(이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피고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성립한 상태였음은 분명하고, 위 계약 체결 당시 C에게 자력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C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책임재산이 일실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어 위 계약 체결에 관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에게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과 피고는 부자관계에 있는 점, 원고는 2023. 3. 12.경 피고의 어머니인 F을 수신인으로 하여 원고가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포함한 27,170,66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F이 이를 수령한 점, 그런데도 피고는 그 후인 2023. 5. 30. 및 2023. 5. 31.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던 23,409,485원 중 대부분인 20,000,000원을 F에게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일실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3)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24,480,000원(=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액 59,480,000원 - 원고가 C으로부터 변제 받았다고 자인하는 35,000,000원)] 및 C이 2022. 12. 2. 피고에게 이체한 금액인 23,409,485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1,565,5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이체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23,409,485원 전액을 지출하거나 이체하였으므로, 피고가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D은행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위 11,565,5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565,5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원재

1)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2022. 12. 2. 체결된 11,565,575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위적

청구 및 주문 제1항과 같은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한다.